

의안번호	2201892
의 퇴 인	김도읍의원
회 답 일	2024. 8. 19.
추계번호	24B208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억 2,000만원, 2029년 80억 2,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89억원(연평균 57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145억원(연평균 29억원)
 - (지방비) 5년간 144억원(연평균 28억 8,0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안 제9조제1항)	진흥지역 지원비용	800	4,000	8,000	8,000	8,000	28,800	5,760
	사업운영비	20	20	20	20	20	100	20
추가재정소요		820	4,020	8,020	8,020	8,020	28,900	5,780
	국비	420	2,020	4,020	4,020	4,020	14,500	2,900
	지방비	400	2,000	4,000	4,000	4,000	14,400	2,880

주: 1. 연도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수는 ('25~'29) 각 2개소 등 추계기간 동안 10개소
 2. 화훼산업 진흥지역 1개소당 지원금액은 3년간 총 40억원으로, 1차년도 4억원(10%), 2차년도 16억원(40%), 3차년도 20억원(50%)
 3.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비용의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 : 50%이며, 사업운영비는 전액 국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u>화훼산업 진흥지역</u>(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하여야 함. 이 경우 미리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제1항) ※ 현재 재량규정이던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와 협의 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임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1조(화 훼문화진흥 전 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 적인 추진을 위하여 <u>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u> (이하 “전담기관”이 라 함)을 지정하여야 함(제1항)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 제 11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 요가 발생할 수 있음	의무규정
3	안 제16조(화 환 표시의 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제14조 및 제15조 ¹⁾ 에 따른 <u>화환</u>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계</u> <u>공무원</u> 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u>농수산물 명예감시원</u> 에게 <u>화환</u> <u>표시</u> 의 지도·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제2항) ※ (현행) ‘재사용 화환’에 대한 표시의무, 조사, 지도·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 실시 ⇒ (개정안) 모든 ‘화환’에 대한 표시의무, 조사, 지도·홍 보, 위반사항 신고 등 실시	재량규정
4	안 제16조의2 (신고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4조 또는 제15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와 함께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포상금</u> 을 지 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 1) 안 제14조(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
는 해당 화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화환의 표시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2.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 비율
 3. 생화의 재사용 여부
 4. 제작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5. 판매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화환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5조(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화환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표시의
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9조제1항(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2	안 제11조(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	• 미대상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법 제11조제2항²⁾에 따라 지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농산물마케팅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화훼소비생활화 사업’을 추진하게 할 계획이므로 현행 사업예산으로 충당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농산물소비기반조성 (농산물소비촉진) (3041-385)</td><td>6,617</td><td>10,899</td><td>6,969</td></tr> <tr> <td>— 농산물소비촉진지원</td><td>4,364</td><td>4,167</td><td>2,917</td></tr> <tr> <td>· 화훼</td><td>2,132</td><td>2,025</td><td>1,440</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농산물소비기반조성 (농산물소비촉진) (3041-385)	6,617	10,899	6,969	— 농산물소비촉진지원	4,364	4,167	2,917	· 화훼	2,132	2,025	1,440
사업명	2022	2023	2024																
농산물소비기반조성 (농산물소비촉진) (3041-385)	6,617	10,899	6,969																
— 농산물소비촉진지원	4,364	4,167	2,917																
· 화훼	2,132	2,025	1,440																
3	안 제16조(화환 표시의 조사 등)	—	• 미대상 — 현재 ‘재사용 화환’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표시의무, 조사, 지도·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을 ‘모든 화환’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현행 사업예산에서 충당 가능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농산물원산지관리 (6032-311)</td><td>17,866</td><td>18,335</td><td>18,517</td></tr> <tr> <td>— 재사용화환표시관리 · 명예감시원 활동비, 안내홍보 리플릿, 점 검용 서식, 사례집 등</td><td>206</td><td>206</td><td>206</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022	2023	2024	농산물원산지관리 (6032-311)	17,866	18,335	18,517	— 재사용화환표시관리 · 명예감시원 활동비, 안내홍보 리플릿, 점 검용 서식, 사례집 등	206	206	206				
사업명	2022	2023	2024																
농산물원산지관리 (6032-311)	17,866	18,335	18,517																
— 재사용화환표시관리 · 명예감시원 활동비, 안내홍보 리플릿, 점 검용 서식, 사례집 등	206	206	206																
4	안 제16조의2(신고 포상금)		• 미대상 — 현행 ‘농산물원산지관리 사업(6032-311)’의 포상금 예산에서 충당 가능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농산물원산지관리 (6032-311)	17,866	18,335	18,517
			- 농산물원산지관리 포상금	360	360	3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정책역량과 재정지원을 집중할 계획
 - **(화훼산업 진흥지역)**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유통·판매 등 화훼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된 주 생산지로,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복합기능을 갖춘 전문화훼생산지역
 - [참고자료 1]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계획(안) 및 [참고자료 2] 지역별 화훼재배 현황 참고
- (재정지원) 1개소당 총사업비 4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이내에서 지자체별 필요한 항목과 예산 규모로 설계·지원
 - 총사업비: 개소당 40억원 규모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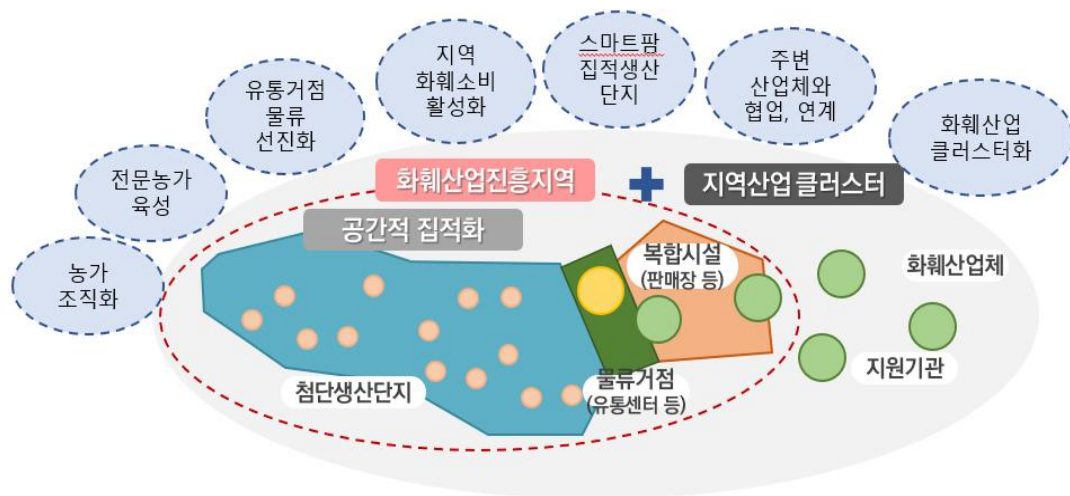
2) 법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 * HW사업 구성시 유사사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부지매입·부설 주차장 조성비 지원 제외), SW사업(운영비 포함)은 전체사업비의 20% 이내 집행
- 재원별 비중: 국비 50%(20억원) 지방비 50%(20억원)
- * 진흥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비용(1억원 한도), 1년차 SW사업 추진을 위한 선 투입 지방비는 매칭 지방비로 인정
- 사업 기간: 3년
- * 재원배분(국비 기준): 1년차 2억원 → 2년차 8억원 → 3년차 10억원

[그림 1]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구성 개념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계획」, 2024.4.

[표 2]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내용

분야	주요 사업 내용
시설지원 (H/W)	• 화훼생산 관련 공동이용 시설·장비 – 시설·장비 보수 및 개선 • 화훼 가공 관련 시설·장비 – 집하, 예냉, 선별 등 시설·장비 도입 • 화훼 유통 관련 시설·장비 – 습식유통 장비, 저온 저장고 등 도입 • 소속 농가에 대한 품목별 재배기술, 조직화 등 교육, 체험 시설/장비(교육장, 기자재 등) 또는 소비자 교육, 체험, 전시, 판매장, 카페 등이 복합화된 화훼문화판매센터 등
사업활성화 역량강화 (S/W)	•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품목특성, 농기계 조작/관리 교육 등 • 경영체 조직관리 및 생산역량 개선 등 • 규격화를 통한 농가 품질관리 교육·컨설팅 •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운영, 진흥지역발전 전문 컨설팅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계획」, 2024.4.

나.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안 제9조제1항)

-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³⁾을 의무화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연도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수) ('25~'29) 각 2개소
 - (1개소당 지원금액) 3년간 총 40억원
 - 1차년도: 4억원(10%)
 - 2차년도: 16억원(40%)
 - 3차년도: 20억원(50%)
 - ※ 이때 각 1개소당 지원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 50% : 50%
 - (사업운영비) 전체 진흥지역에 대한 평가 등 사업운영비는 매년 2,000만원으로 전액 국비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89억원으로 추계됨
 - 국비: 5년간 145억원
 - 지방비: 5년간 144억원

3) 농림축산부의 「제1차('22~'26)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화훼산업 진흥지역은 ('22) 2개소 → ('25) 5개소(누계)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화훼산업 진흥지역은 '24년 1개소(충북 음성) 지정

[표 3]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원경비 등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비용	1차 년도	진흥지역 수(A)	2	2	2	2	2	—
		지원단가(B, 10%)	400	400	400	400	400	—
		소계(C=A×B)	800	800	800	800	800	4,000
	2차 년도	진흥지역 수(D)	—	2	2	2	2	—
		지원단가(E, 40%)	—	1,600	1,600	1,600	1,600	—
		소계(F=D×E)	—	3,200	3,200	3,200	3,200	12,800
	3차 년도	진흥지역 수(G)	—	—	2	2	2	—
		지원단가(H, 50%)	—	—	2,000	2,000	2,000	—
		소계(I=G×H)	—	—	4,000	4,000	4,000	12,000
	소계(J=C+F+I)		800	4,000	8,000	8,000	8,000	28,800
	국비 (J1=J×50%)	400	2,000	4,000	4,000	4,000	14,400	
	지방비 (J2=J×50%)	400	2,000	4,000	4,000	4,000	14,400	
평가 등 사업운영비(K)			20	20	20	20	20	100
추가재정소요 (L=J+K)			820	4,020	8,020	8,020	8,020	28,900
	국비(J1+K)		420	2,020	4,020	4,020	4,020	14,500
	지방비(J2)		400	2,000	4,000	4,000	4,000	14,400

주: 1. 연도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수는 ('25~'29) 각 2개소 등 추계기간 동안 10개소
 2. 화훼산업 진흥지역 1개소당 지원금액은 3년간 총 40억원으로, 1차년도 4억원(10%), 2차년도 16억원(40%), 3차년도 20억원(50%)
 3.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비용의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 : 50%이며, 사업운영비는 전액 국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계획 및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⁴⁾

1. 지원 자격 및 선정 절차

□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군·구

- 화훼산업이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국적 지명도가 있어, 화훼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내 경제적 효과창출이 가능한 지역
- 특정 읍·면·동을 중심으로 10ha이상 화훼재배가 집적된 지역으로 화훼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30ha 이상*인 지역의 시·군·구

* 화훼관련 유통·판매 등의 시설로 일정 수준의 운영 일수와 취급액을 충족하는 시설
－ 생산면적 확대, 관련기업(가공·유통·소비) 유치 등 시너지제고가 가능한 경우 여러 읍·면·동을 포함하는 탄력적(반경 10km 내외)인 범위 지정도 가능

□ 화훼산업육성 시행계획('22~'26)을 수립한 시·도 중 자체 화훼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화훼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한 시·군·구

* 진흥지역 지정신청전까지 수립가능하며, 원예산업발전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한 것도 인정

** 발전협의회는 지정평가 전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실적을 증명해야 함

□ (선정절차)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

- * 조직화, 유통개선, 품질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한 대표품목을 선정
 - － 지자체는 현장여건 및 농가의견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 선정된 지자체는 평가결과(평가위원 지적사항)를 반영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정해진 기한내 최종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는 보완된 최종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4)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계획」, 2024.4.

2. 재정 지원 및 시행 주체

□ (재정지원) 개소당 총사업비 4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이내에서 지자체별 필요한 항목과 예산 규모로 설계·지원

○ 총사업비: 개소당 40억원 규모 이내

* HW사업 구성시 유사사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부지매입·부설 주차장 조성비 지원 제외), SW사업(운영비 포함)은 전체사업비의 20% 이내 집행

○ 재원별 비중: 국비 50%(20억원) 지방비 50%(20억원)

* 진흥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비용(1억원 한도), 1년차 SW사업 추진을 위한 선 투입 지방비는 매칭 지방비로 인정

○ 사업 기간: 3년

* 재원배분(국비 기준): 1년차 2억원 → 2년차 8억원 → 3년차 10억원

분야	주요 사업 내용
시설지원 (H/W)	• 화훼생산 관련 공동이용 시설·장비 - 시설·장비 보수 및 개선 • 화훼 가공 관련 시설·장비 - 집하, 예냉, 선별 등 시설·장비 도입 • 화훼 유통 관련 시설·장비 - 습식유통 장비, 저온 저장고 등 도입 • 소속 농가에 대한 품목별 재배기술, 조직화 등 교육, 체험 시설/장비(교육장, 기자재 등) 또는 소비자 교육, 체험, 전시, 판매장, 카페 등이 복합화된 화훼문화판매센터 등
사업활성화 역량강화 (S/W)	•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품목특성, 농기계 조작/관리 교육 등 • 경영체 조직관리 및 생산역량 개선 등 • 규격화를 통한 농가 품질관리 교육·컨설팅 •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운영, 진흥지역발전 전문 컨설팅 등

□ (시행주체) 시·군·구 화훼산업 진흥지역 사업추진단*

* 사업추진단: 시·군 직속(TF등)으로 구성(사업종료후 시·군이 직접운영하거나 시·군이 참여하는 법인형태로 전환 또는 유통주체 등에 위탁하여 지속 운영)

3. 주요 항목별 세부기준

□ (재배면적 등 산정) 특정 읍·면·동을 중심으로 10ha이상 화훼재배가 집적된 지역으로 화훼 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30ha이상 지역

○ (재배면적) 신청 시 화훼재배현황을 기준으로 기초면적 판단

* 화훼재배면적이 30ha이상인 시·군은 36개소, 읍면동은 24개소

([참고자료 2] 지역별 화훼재배 현황 참고)

○ (유통시설 등) 유통, 가공, 판매, 기타 시설은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진흥지역 관련 시설로 포함 가능하나, 평가 시 적정여부는 판단

－ 생산농가가 여러 읍·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경우 거점 유통시설 등 특정 기반시설에 연계 마련 가능

< 재배면적 등 산정 기준 >

구분	재배면적	유통·가공 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정의	진흥지역 설정 지역의 재배면적 (최소 10ha이상일 것)	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화훼유통·가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로 연간 운영일수 100일 이상, 화훼 취급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판장, 유통센터, 가공공장 등	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화훼 소매 시설로 화훼 판매액 비중 80% 이상 시설	진흥지역 내에 위치한 상설전시장, 화훼테마파크 등 화훼체험 및 전시관광시설 등
판단 근거	화훼재배통계 및 화훼산업진흥계획	화훼산업진흥계획	화훼산업진흥계획	화훼산업진흥계획
면적 포함 범위	지역 내 총 재배면적	건축물이 포함된 사용 부지 총면적	판매시설의 연면적 (기타 부대시설 및 공용 면적 제외)	건축물이 포함된 사용 부지 총면적
		화훼 유통·판매·전시 등 복합시설인 경우 총 부지면적 기준으로 계산 ※ 재배단지와 시설간 1km미만인 경우만 진흥지역 면적에 포함하고, 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시설의 면적만 산정에 포함		
기타	화훼재배통계 및 지자체별 자료 * 인정여부는 평가시 검토	증빙자료(시설내역서)	진흥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평가시 포함의 적정 여부 판단	진흥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평가시 포함의 적정 여부 판단

- (지원 가능 항목) 진흥지역의 목적 등 기본구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다만, 다른 원예시설 지원과 중복지원을 없애기 위해 타 사업에서 지원이 어려운 기초 공동시설 및 지역역량 개발 중심으로 추진
 - * 추후 진흥지역 참여농가가 타 시설지원사업 신청시 지자체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간 연계 유도('26~)
 - 준비기간 등 연차별 특성을 감안, H/W·S/W 사업을 균형있게 구성
 - 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H/W사업과 사업활성화, 품질관리 및 조직화 등 S/W 사업으로 구성
 - 시설획득 위주 사업 방지를 위해 H/W시설 지원은 80% 이내로 제한
 - * 시설·공간 조성사업의 경우는 사업 대상 시설·토지 및 그 주변 여건(규제사항, 시설 과잉 등)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수립
 - 시설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선별장 등 공동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규 조성 보다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효율성 제고

구분	세부항목	주요 내용
1년차~	사업 활성화 지원(S/W)	• 전문 컨설팅을 통한 진흥지역 발전 방안 구체화 • 진흥지역 사업추진단 및 발전협의회 운영 •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화훼 상품화·마케팅, 판로개척, 화훼문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용 ※ 단순 이벤트성 사업은 지원 불가
2년차~ 3년차	공동이용 시설지원(H/W)	• 생산자 공동지원시설, 통합마케팅 유통시설, 제품화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 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개별농가 및 유통사업자별 지원, 소모품 지원 불가
계속	역량강화 지원(S/W)	•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개발 사업 운용 및 지원 • 전문생산기술 보급·확산, 생산 및 유통 관리, 화훼 품질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세미나 및 포럼, 농가 조직화 등

○ 농식품 분야 타 사업과 중복 되는 사업은 지원 불가

구분	추진가능한 화훼관련 사업(예시)
생산	• 공동 육묘장 운영 • 생산자 조직화 • 복합형 체험농장 육성(화훼체험장, 소매장 등)
유통	• 화훼 공동선별장 운영 • 공동 화훼전문유통시설 신축 및 개보수 • 공동 콜드체인 인프라(시설 및 장비) 설치 •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 화훼배송 물류기업 및 센터 입주(소비자 직배송)
가공	• 화훼원료 기반 물질을 이용한 제품(화장품 등) 생산 • 화훼를 이용한 공산품(압화, 장식소품 등) 생산
판매	• 로컬 플라워샵 운영 • 온라인 판매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 • 통합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 공동판매(화훼구독, 꾸러미 등)
문화	• 복합 커뮤니티 공간 구축 • 화훼 상설 전시(실내외 식물원) • 화훼활용 염색, 꾸미기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원예치료·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	• 화훼재배기술 실습장 (신기술 실증 및 교육) • 화훼전문 교육기관(교육시설) 운영 • 플로리스트 육성 등 관련종사자 역량강화
기타	• 화훼 관련 단체 및 연구소 사무실 유치 • 거버넌스 및 협의회 운영 • 전문 컨설팅

○ 생산을 위한 투입재 등은 지원 배제

구분	지원불가 사업(예시)
생산·유통 ·가공	• 농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농로, 배수로 등) 시설 • 토지·부지의 매입비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포장비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 • 기존제품 및 신제품 직접생산비 지원(신제품의 시제품 제작비는 예외)
기타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 본 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와 일회성 행사비

[참고자료 2] 지역별 화훼재배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⁵⁾

□ 읍·면·동별 화훼재배 현황(10ha 이상, '20년 기준)

○ 10ha 이상인 읍·면·동은 93개, 그중 30ha 이상인 지역은 24개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30ha 이상 유무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10.4	X
	영월군	주천면	17.4	X
	인제군	인제읍	10.7	X
	평창군	진부면	18.6	X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1.3	X
		관산동	34.9	O
		삼송동	10.9	X
		원신동	22.9	X
		홍도동	15.3	X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19.2	X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	29.1	X
	과천시	과천동	87.5	O
		문원동	14.2	X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3.8	X
		시흥동	27.7	X
	양주시	장흥면	22.3	X
	여주시	홍천면	20.9	X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51.6	O
		원삼면	18.3	X
	이천시	장호원읍	21.6	X
		중리동	11.4	X
		호법면	21.3	X
	파주시	조리읍	28.9	X
	평택시	진위면	15.2	X
	포천시	군내면	11.0	X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10.3	X
		삼성면	19.6	X

5) 농림축산식품부,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계획」, 2024.4.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30ha 이상 유무
	진천군	덕산읍	11.3	X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15.0	X
	부여군	충화면	11.8	X
	서산시	고북면	15.1	X
		팔봉면	28.6	X
	예산군	신양면	16.5	X
	태안군	남면	44.9	O
		태안읍	99.7	O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35.2	O
	남원시	운봉읍	21.2	X
	순창군	구림면	10.6	X
		금과면	18.5	X
		순창읍	14.8	X
	완주군	봉동읍	60.1	O
		소양면	94.7	O
	정읍시	북면	18.9	X
		상교동	19.4	X
		소성면	27.6	X
		웅동면	55.7	O
		입암면	14.2	X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17.0	X
		칠량면	18.5	X
	곡성군	죽곡면	11.9	X
	광양시	옥룡면	68.5	O
	구례군	구례읍	13.5	X
		마산면	61.9	O
		용방면	23.4	X
	나주시	봉황면	20.3	X
	순천시	별량면	27.6	X
		상사면	20.5	X
		서면	211.6	O
		송주읍	64.9	O
		주암면	11.4	X
		해룡면	25.9	X
	영광군	군남면	13.7	X
		군서면	16.0	X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30ha 이상 유무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77.7	O
	청도군	이서면	12.9	X
	청송군	현동면	25.1	X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52.4	O
		진영읍	12.0	X
		칠산서부동	23.8	X
	사천시	곤명면	30.7	O
		사천읍	31.9	O
	산청군	신안면	16.4	X
	진주시	금산면	19.9	X
		내동면	30.5	O
		대평면	13.3	X
		명석면	12.0	X
		미천면	30.1	O
		정촌면	10.8	X
		집현면	14.6	X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24.7	X
	합천군	대양면	13.7	X
		쌍백면	73.0	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12.9	X
	제주시	구좌읍	54.1	O
		아라동	20.4	X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0.3	X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12.2	X
	강서구	강동동	67.0	O
	금정구	선두구동	12.4	X
	기장군	철마면	37.1	O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61.5	O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봉무동	11.5	X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	13.0	X

□ 시·군·구별 화훼재배 현황(10ha이상, '20기준)

○ 10ha 이상인 시·군·구는 88개, 그중 30ha 이상인 지역은 36개소

시·도	시·군·구		면적(ha)	30ha 이상 유무
강원도	강릉시		24.0	X
	양구군		10.6	X
	영월군		23.8	X
	원주시		13.6	X
	인제군		10.7	X
	평창군		39.5	O
경기도	가평군		15.9	X
		고양시 덕양구	116.4	O
		고양시 일산동구	33.4	O
		고양시 일산서구	38.8	O
	고양시 전체		188.6	O
	과천시		108.5	O
	광주시		18.1	X
	김포시		13.8	X
		성남시 수정구	43.8	O
	성남시 전체		52.8	O
		수원시 권선구	11.2	X
	수원시 전체		11.4	X
	안성시		15.6	X
	양주시		28.4	X
	여주시		39.0	O
		용인시 처인구	75.9	O
	용인시 전체		77.9	O
	의왕시		17.3	X
	이천시		77.3	O
	파주시		55.9	O
	평택시		26.9	X
	포천시		31.1	O
	하남시		16.3	X
	화성시		21.1	X

시·도	시·군·구	면적(ha)	30ha 이상 유무
충청북도	옥천군	10.6	X
	음성군	43.0	O
	제천시	13.3	X
	진천군	33.7	O
	충주시	21.2	X
충청남도	공주시	23.8	X
	당진시	13.8	X
	부여군	29.3	X
	서산시	73.1	O
	아산시	10.4	X
	예산군	39.0	O
	천안시 동남구	26.7	X
	천안시 전체	28.7	X
	태안군	159.5	O
전라북도	고창군	37.1	O
	김제시	17.1	X
	남원시	23.6	X
	순창군	45.8	O
	완주군	168.3	O
	익산시	11.6	X
	임실군	12.5	X
	전주시 덕진구	14.2	X
	전주시 전체	15.2	X
	정읍시	176.3	O
전라남도	강진군	51.3	O
	곡성군	21.2	X
	광양시	72.0	O
	구례군	127.6	O
	나주시	56.5	O
	순천시	374.7	O
	영광군	59.5	O
	해남군	12.6	X
경상북도	김천시	13.3	X
	봉화군	13.0	X

시·도	시·군·구		면적(ha)	30ha 이상 유무
	상주시		13.1	X
	성주군		13.4	X
	안동시		17.5	X
	예천군		84.7	O
	청도군		18.8	X
	청송군		28.2	X
	칠곡군		16.2	X
경상남도	거제시		28.3	X
	거창군		13.2	X
	김해시		118.8	O
	밀양시		22.1	X
	사천시		91.7	O
	산청군		26.8	X
	양산시		11.9	X
	진주시		162.0	O
		창원시 마산합포구	21.1	X
		창원시 의창구	31.6	O
	창원시 전체		60.7	O
	함안군		11.6	X
	합천군		90.3	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8.7	X
	제주시		97.0	O
서울특별시	서초구		13.4	X
인천광역시	서구		11.5	X
부산광역시	강서구		83.2	O
	금정구		13.9	X
	기장군		47.3	O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66.9	O
대구광역시	동구		11.8	X
광주광역시	광산구		10.9	X
	북구		19.8	X